

## 붙임 5

## 경력환산기준표

| 구분  | 환산율  | 경력 내용  |
|-----|------|--|
| 제1호 | 100% |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<br>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<br>3. 우리공사 근무기간<br>4. 필요에 의해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 채용할 경우, 해당 자격증의 대표 직종에 종사한 근무기간 |
| 제2호 | 90%  | 제1호 외의 법인 또는 각종단체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|
| 제3호 | 50%  | 제1호, 제2호를 제외한 근무 경력  |
| 기타  | 100% | 1. 박사학위 3년 근무경력 추가인정(공사 직무 관련 학위 한정)<br>2. 석사학위 1년 근무경력 추가인정(공사 직무 관련 학위 한정)   |

- 가. 각종 경력환산에서 같은 환산요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나. 입사지원 시 제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)을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산정한다.
- 다. 공사 직무 관련분야 학위란 경제, 금융, 경영, 행정, 법학 및 각 대학이 별도로 인정하는 해운·항만 물류분야 등 공사 직무와 관련된 학위를 말한다. 단, IT 및 기록관리학 등의 특정 직무에 한정된 학위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를 지원할 경우 학위경력을 별도 인정한다.
- 라. 법인 또는 각종단체의 파산·해체 등 제반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.
- 마. 증빙서류 제출 시 국외에서의 경력도 국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바.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우선 시 적용하며,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사.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전 경력을 별도 인정하며, 신규입사자부터 본 경력환산기준을 따른다.
- 아. 사장은 업무의 전문성·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상기 기준표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.
- 자. 상기표는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차. 경력환산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한다.